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신설 2023. 7. 20.>

하자재발 사실 통보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농업기계
소유자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전자우편 주소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통보대상
농업기계</td><td colspan="2">기종명(형식명)</td><td colspan="2">규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제조번호</td><td colspan="2">인도받은 날짜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행거리
km</td><td colspan="2">통보연월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동일한
하자 수리
내역</td><td colspan="2">하자구분</td><td colspan="3">[ ] 중대한 하자 [ ] 일반 하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1
회</td><td>수리업자명</td><td>수리요청일</td><td>수리완료일</td></tr>
<tr><td>하자내용(증상)</td><td colspan="2">수리내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2
회</td><td>수리업자명</td><td>수리요청일</td><td>수리완료일</td></tr>
<tr><td>하자내용(증상)</td><td colspan="2">수리내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3
회</td><td>수리업자명</td><td>수리요청일</td><td>수리완료일</td></tr>
<tr><td>하자내용(증상)</td><td colspan="2">수리내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수리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? [ ]예(_____회) [ ]아니오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누적 수리기간: 총_____일</td></tr>
</table>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업기계 제조업자·수입업자 귀하

유의사항

1. 교환·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제조업자등(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)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.
2. 수리 횟수 산정 시 농업기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.

작성방법

1. 중대한 하자는 1회,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2. 중대한 하자, 일반 하자 구분은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,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.
   가. 중대한 하자: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,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, 차동장치, 차축, 차륜, 타이어 등 주행장치, 유압장치,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완충장치,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, 주행과 관련된 전기·전자장치, 차대(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합니다)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
   나. 일반 하자: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